
2026년 (은혜의집)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회복지법인 반월복지재단

은혜의집

(시설장)

목 차

제1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제1절 안전·보건경영방침

1. 안전·보건 목적
2.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전략
3.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2절 안전·보건 관리조직

1. 안전·보건 관리 조직도
2. 안전·보건 관리 인력현황 및 업무분장
3. 책임과 권한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제3절 근로자 참여

1. 종사자 의견 청취 방법

제2장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절 안전보건교육

1. 안전보건교육 계획
2. 안전보건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

제2절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1.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계획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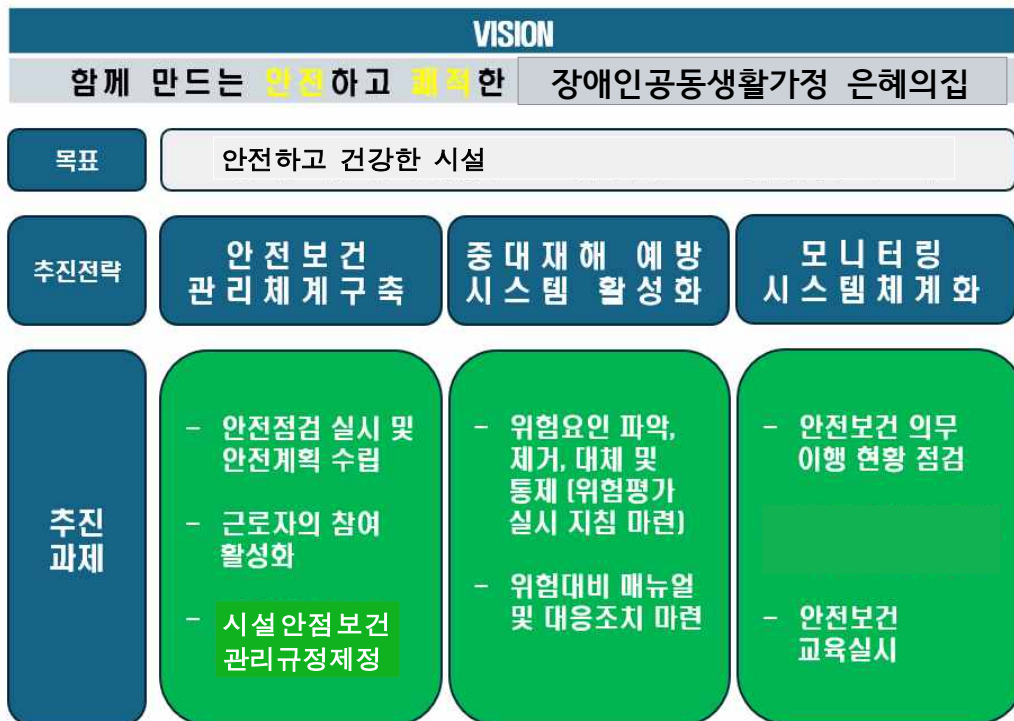
제1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제1절 안전보건 경영방침

1. 안전보건 목적

- 은혜의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과 입소인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2.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전략



3. 안전보건 경영방침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은혜의집 안전·보건 경영방침

은혜의집은 직원 및 입소인의 안전과 보건을 은혜의집운영의 중점과제로 삼아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며,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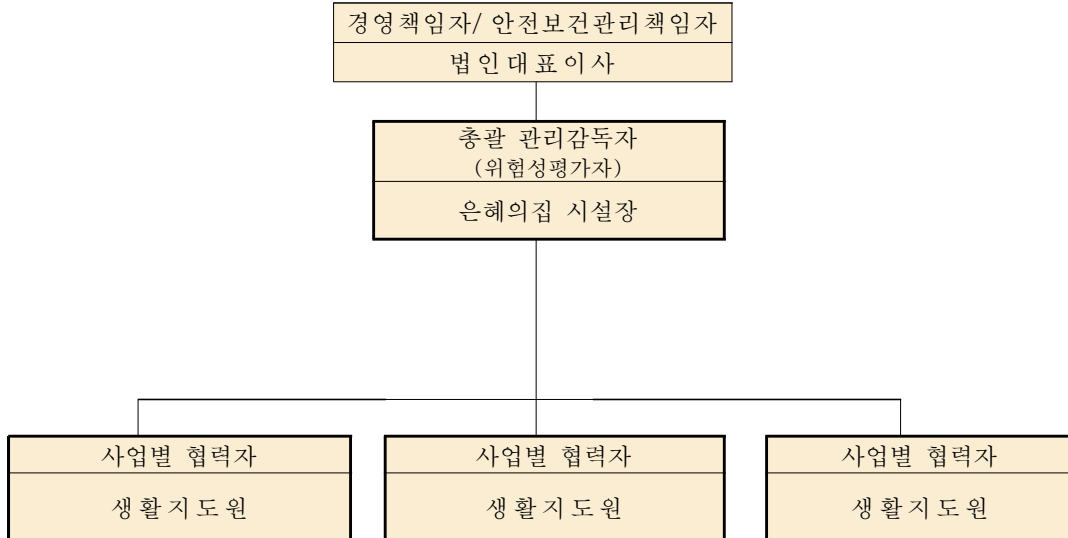
1.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입소인 등)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은혜의집 경영활동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은혜의집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관련 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4.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대응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5. 하도급간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자원지원 및 정보공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한다.

2026. 01 . 01.

은혜의집 시설장 송수림 (서명)

제2절 안전보건 관리조직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비상연락망)



2. 안전·보건관리 인력현황 및 업무분장

구분	담당	권한	역할
경영책임자	법인대표이사 오동환	승인/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 방침/목표/책임과 권한 승인 -안전보건규정 및 지침서, 매뉴얼에 대한 승인 -안전보건활동 자원제공 검토 및 승인 -안전보건 계획의 실행 및 운영확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시설장 송수립	계획수립/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 방침/목표/책임과 권한 확인 -안전보건 규정 및 지침서, 매뉴얼에 대한 확인 -안전보건 계획의 실행 및 운영확인 -안전보건 경영 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무재해 운동참여 및 작업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실시
총괄 관리감독자	생활지도원 김봉숙	계획수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설장) 부재 시 업무대행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행 점검 및 보고 -사고 접수, 재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책임과 권한

- 경영책임자(법인대표이사)
 -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따른 법인과 수행기관의 안전보건 목표를 승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설장)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주관
 -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

- 총괄관리감독자(생활지도원)
 - 안전보건 추진계획에 따른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실적을 관리
 - 승인된 안전보건추진계획에 따라 센터가 운영되도록 함.

- 종사자, 입소자
 - 수립된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되는 추진계획을 숙지하고 안전보건활동에 참여.

4.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리

- 반기 1회(6월,12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 평가
 - 관련법 준수 여부
 - 업무수행 세부 내용별로 적정 여부
 -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점검

제5절 종사자 및 입소인 참여

1. 종사자 의견청취 방법

- 시기 : 반기 1회 이상 점검
- 내용 : 시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종사자와 「종사자 참여평가표」를 통해 운영사항 점검
- 방법 : 종사자 의견청취(회의, 면담, 온라인 접수, 건의함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은혜의집에서 안전보건 이행을 하고 있는지 종사자 및 입소인이 함께 점검.

건의 사항 및 의견

→

은혜의집 시설장 송부

→

법인 이사회 안전 회부

제2장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절 안전보건교육

1. 안전보건교육 계획

○ 직원 안전보건교육

번호	교육내용	횟수	총 시간	비고
1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안전관리제도의 이해 등	1	2	시설장 / 생활지도원
2				
3				
4				
5				

○ 안전보건담당자 교육

구분(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경영책임자 (시설장)	중대산업재해발생 시 총 20시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법적 준수사항 및 기타 안전보건활동 사항	-온라인, 오프라인내 부교육 병행 -중대재해처 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생활지도원	3시간	-응급상황대응 및 감염예방교육 -화재예방교육	

2. 안전보건교육 실시 점검

- 「안전보건교육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 반기 1회 점검 실시

제2절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1.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활동계획

항목	점검자	점검 대상	점검내용	기간	비고
안전·보건 현장점검	총괄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보건담당자	복지관 및 산하시설	하절기 / 동절기 시설점검	5~6월 10~11 월	자치구 보고
안전점검	안전담당자	복지관 및 산하시설	소방시설 정기점검	월1회	자체
			시설물 정기점검 (가스보일러, 일반시설물 등)	일1회 월1회	자체
감염예방점검	총괄관리감독자 보건담당자	이용자 종사자	발열체크 상황발생시 동향보고	수시	자체
응급상황 대처 및 사후관리	보건담당자	이용자 종사자	업무 및 훈련 중 건강상 문제발생시 응급대응 및 사후관리	수시	자체

2.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계획

○ 건강검진 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

- 실시주기 : 채용전 건강검진, 일반검진(매 2년에 1회), 종합건강검진(경력 5년 이상)
- 기록확인 : 인사담당자 공유를 통한 검진확인 및 기록관리(인사기록카드)

3. 안전보건 점검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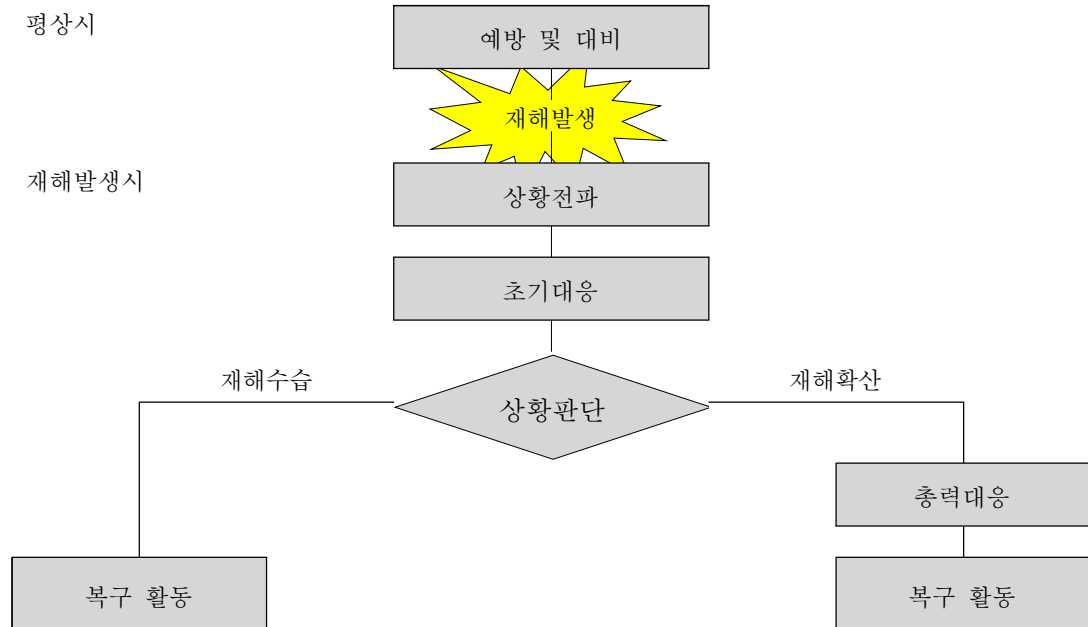
구분	점검 주기	규정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마련	월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절차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여부 점검	반기 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준수사항 확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반기 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준수사항 확인
도급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등 이행여부 점검	건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 준수사항 확인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점검표	반기 1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준수 사항 확인

* 「대형사고 3대 유형」 작업 전 안전점검,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진행

3. 위험대비 대응체계

1) 위험대비 대응체계

단계		담당	주요활동
평상시		- 안전관리책임자 - 시설직원	✓ 예방 대비 안전관리 활동 - 각종 계획서 점검 - 안전 점검 - 교육 및 훈련 - 비상 연락망 최신화 - 각종 장비 비축 - 특이 상황감시 등
재해 위기 시	상황전파 (재난 임박 혹은 발생 시)	- 위기 상황을 최초로 목격한 시설종사자 - 위기 상황 신고접수를 받은 시설종사자	✓ 상황전파 활동 - 119, 112 및 유관기관신고 - 비상 연락망 가동(자위소방대 출동) - 시설 내 안내방송 - 최초 현장 대응
	초기대응	- 안전관리자(자위소방대장) - 시설종사자	✓ 최초 현장 대응 인력 장비 보강 후 초기대응 실시 ✓ 자위소방대장은 총력대응 여부판단 및 유관기관 협업 - 119, 112 및 유관기관 수시 확인 신고
	총력대응	- 자위소방대 - 지휘통제반(팀) - 초기소화반(팀) - 피난유도반(팀) - 응급구조반(팀) * 시설별 소방계획서에서 따라 조직 구성	✓ 유관기관 도착 시까지 총력대응 - 총력대응(인력 및 장비) 추가 보강 - 시설이용자 대피 -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응급환자병원 이송 ✓ 유관기관 도착 후 협업을 통한 총력대응
복구활동		- 안전관리책임자 - 시설종사자	✓ 응급복구 및 피해지역 방역 실시 ✓ 피해 상황집계 ✓ 전기, 통신, 가스등 시설물복구



4. 위험대비 대응 메뉴얼

1) 예방활동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위험성평가로 대체)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
-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 센터 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
- 직원 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유소견자 등 관리

2) 비상조치계획 수립

- 비상사태 대응체계 구성

대상	권한	역할
경영책임자	승인 / 지원	- 비상경보체계 및 절차 검토 및 승인 - 비상경보체계 운영을 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자원 승인 - 비상경보체계 실행 운영에 대한 주기적 확인 - 재해조사 및 원인조사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수립 / 지원	- 사고 보고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중대재해 및 비상 사태 발생시 체계 운영지원 - 중대재해 및 비상사태 발생시 운영현황 지속적 확인 및 검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지도 / 지원	- 비상경보체계 및 절차 검토, 승인 - 재해조사 및 원인조사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3) 사고상황별 초기대응방법

사고상황	초기대응방법
심정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책) 실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낙상	임의로 이동하지 않고, 응급의료전문가 지시 따름.
감전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부도체(나무, 플라스틱 등)로 사고자를 떼어냄
질식	작업을 중지하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재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화를 실시하며, 신속히 대피
폭발	2차 폭발에 대비하요 신속하게 폭발장소에서 대피
기계재해	재해발생 시 기계를 정지하여 2차 피해 발생 방지
유해물질 누출	신속히 흐르는 물로 씻어냄
인화성, 산화성물질 누출	점화 원인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를 한 후, 접촉 금지

4) 비상시 대비 및 대응훈련(소방 및 안전보건 교육·훈련으로 대체)

- 목적 : 시설의 소방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유지·관리함으로써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적용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적용범위 : 기관 내의 모든 건축물과 전 직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

○ 교육 및 훈련

- 소방안전 교육 연1회 이상,
- 화재 대피훈련 연2회 이상(2년간 기록보관)
- 안전보건교육1회

○ 소방시설 및 건물 등에 대한 자체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유지·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 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
- 정기 및 가스(수시 및 정기), 전기(년1회 이상),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물 관리 상태, 경고 등 표지판 설치 및 상태 점검 등

○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계획

- 소화기는 정위치에 비치
- 소방시설의 파손, 도난 등의 우려가 있는 설비는 적절한 대책 강구
- 자체점검, 관할소방관서 소방검사, 소방시설 점검업자 위탁점검 등을 수단으로 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 업무 공간 위험상황표 점검 후 필요시 즉시 개선

○ 화기사용제한

- 화기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통제 하에 사용하고, 외부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함.
- 사무실 또는 사업장에는 정·부의 화기책임자를 지정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화기취급상태 점검
 - 화기취급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교육
 - 퇴근 시 보안점검 확인
 - 지정장소 외의 화기취급 단속
- 화기취급 지정장소 외에서 임시로 화기취급을 하고자 하는 자와 고압가스, 가연성가스, 위험물질을 건물 내로 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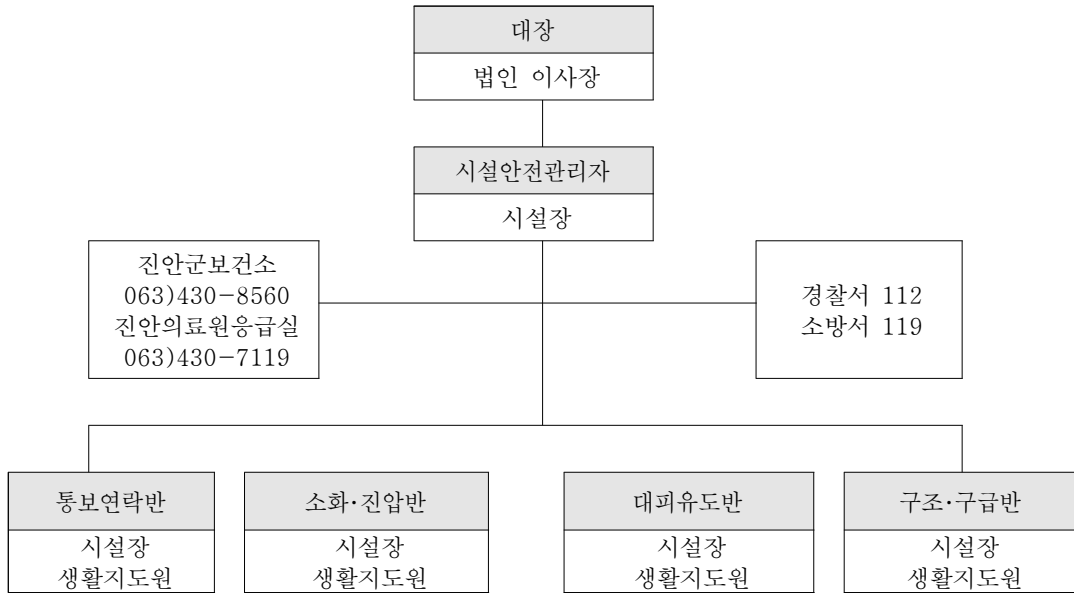
- 소방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기상특보
- 화재발생 위험이 현저한 행위에 대한 제재
- 흡연금지 장소 등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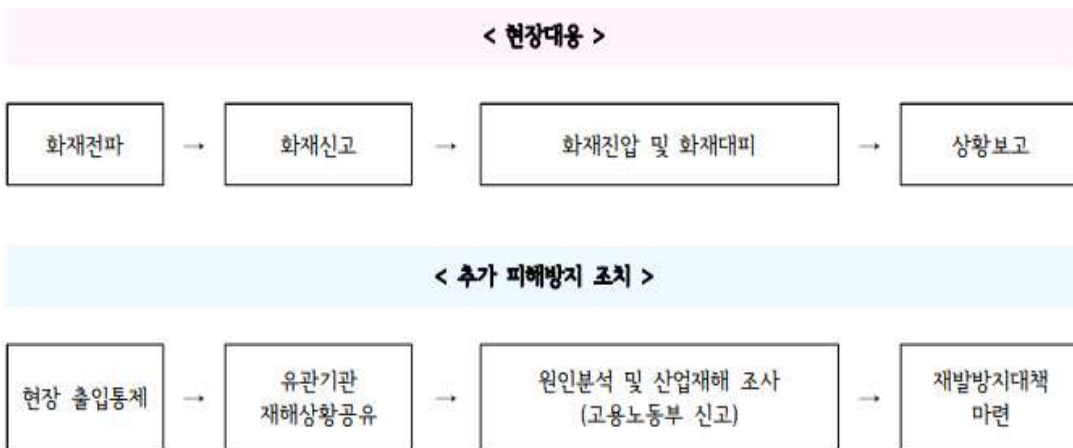
○ 안전관리자 현황표(자위소방대와 동일)

5) 비상통제 조직별 업무분장(소방안전 관리 동일)

통제조직	조치사항	비고
비상통제본부	-비상체제로 전환 -비상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결정 -보도통제와 공식적 보도	경영책임자(법인)
	-비상통제 조직의 동원과 지휘 -비상통제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의 증원요청 -비상사태의 영향과악과 대피상황 결정 -비상동원 체계 훈련 -소방지원단(소방대원 등) 지원요청 등 관련기관 보고 -비상동원 계획 수립과 교육 -소방펌프 가동과 소방용수 확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시설장)
소방 및 재해 안전관리자	-재난발생 공정의 비상운전 정지 -소방펌프 가동에 필요한 조치	총괄관리감독자 (시설장)
통보연락반	-비상방송 -비상 연락망 가동 -통제본부 지시사항 실행	사업별 협력자 시설장/생활지도원
소화진압반	-화재진압 활동 및 발생방지	안전담당자 시설장/생활지도원
대피유도반	-센터 이용자 및 방문자 명단과악 및 보고 -통제본부 지시에 따른 대피 안내 -센터 방문자 진입통제와 소방지원단(소방대원 등) 안내	사업별 협력자 시설장/생활지도원
구조구급반	-인명구조 및 부상자 확인 -응급치료 및 후송	보건담당자 시설장/생활지도원



○ 비상조치대응



○ 화재 발생 시의 행동 요령

- 통보연락반
 - 화재: 발견자가 “불이야!! 불이야!!”를 큰소리로 외치고 발신기의 화재버튼을 누른 후 경보전파 및 119 신고
 - 직원 및 이용자 대피유도
- 소화 및 진압반
 -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므로 소화기를 사용, 화재진압
 - 전기(배전판)를 복구
 - 부상자를 확인하여 구조 및 구급반에 인수
- 대피유도반

- 화재상황에 따른 피난로 등을 통해 대피
- 전원 대피한 후에도 각 업무실을 살피며 점검
- 대피된 이용자들을 잘 안내해서 안전한 곳으로 집결
- 구조 및 구급반
 - 부상자 파악 신속한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
 - 대피도중 가스 흡입에 따른 대비와 처치 준비
 - 상시 비상용 구급약품 구비

가. 화재발생시 대처 요령

- 최초 목격자는 큰소리로 “불이야!! 불이야!!” 외치고 주위 직원 및 이용자에게 알린다.
- 발신기의 비상벨을 누른다.
- 소화기 등 소화전 이용 초기 진압한다.

나. 소화기 사용법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한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 듯이 뿌려 진화한다.
- 투척용 소화기일 경우 불이 난 장소에 던진다.

○ 재해사고 발생 시의 행동 요령

- 재해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위기상황이 있다고 판단 되면, 유관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시설종사자에게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를 지시한다.
- 재해사고 발견자는 즉각 119에 신고하고 안전담당자에 보고한다.
- 대량 사고가 유추 될 때는 대피 안내방송을 통해 대피를 시설종사자와 시설이용자의 대피를 진행한다.
- 유관기관에 대피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 재해 확산 시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이용자 및 직원을 먼저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재해 피난 및 후송

- 이용자 및 직원 등의 대피장소 : 1층 외부대피
 - 시설의 자위소방대의 대피유도반으로 지정한다.
 - 각 피난로 및 비상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배치 계획한다.
 - 대피 장소로 이동은 들것, 천 등을 사용한다.
- 후송절차
 - 재해로 인한 환자 발생 시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안전장소로 대피시킨 후 구조·구급반의 지시에 따라 환자 상태를 분류한다.
 - 구조·구급반의 지원 아래 센터가 보유한 차량 및 앰블런스 등 관내에 소재한 병원에 후송조치 한다.

○ 비상소집

- 당직책임자는 재해발생 시에 시설장 및 필수인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하여야하며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기관명/성명	전화번호	비고
기관	법인 이사장	010-2602-2194	
	시설장	010-4947-1858	
	생활지도원	010-6677-1173	
관할소방서	진안소방서	063)430-5211	긴급전화: 119
	119안전센터	063)786-5272	
의료기관	진안군보건소	063)430-8560	응급실 063)430-7119
	진안의료원	063)430-7000	
경찰서	진안경찰서	063)430-0229	긴급전화 112
군청	진안군청	063)430-2909	담당과

<비상연락망 편성(센터 및 관계기관)>

○ 보험금 보상 및 세금감면

- 화재 : 관할소방서에서 화재증명서를 발급받아 손해보험회사에 제출
- 화재 : 관할세무서 등에 세금납기연장, 세금감면신청(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의하여 국세·지방세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납세담보완화감면)
- 기타 기관 책임보상보험 및 산재보험 신청

6) 집단감염병 비상조치계획

○ 기본 방향

- 감염병 관련 된 해외 지역 방문하였거나, 방문 예정인 직원 및 이용자, 지원인력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체교육 및 근태관리

- 이용자 가정과 통신을 통해 보호자와 연계 강화 및 협조 당부
- 시설 자체적으로 감염증 의심 등 증상을 보이는 직원 및 이용자의 동향파악
- 시설 내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발견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에 신고
- 지자체(보건소 포함) 상황보고, 보건소 신고의무 이행 철저
- 직원 및 이용자 가운데 의사환자 및 확진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는 경우에 세부상황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적절히 조치함

○ 예방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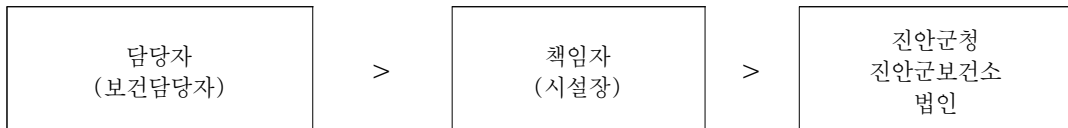
-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전염병 예방교육 강화
- 음용수 등 위생관리 강화(외부업체 연계 위생관리)
- 전염병 발생 무렵 이용자에 대한 격리조치 시행
- 예방용품 관리

번호	품 목	비치 장소
1	손소독제	각 건물 및 공간 출입구 앞
2	체온계	현관 앞(발열체크)
3	의료용 마스크	사무실에 비치 / 외부 방문자 관리
4	손소독제	각 실 입구 / 직원, 입소자, 방문자 등 관리

- 예방용품 비치 : 소비량을 일일 체크 이용자의 10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 방역실시 : 외부 전문 방역업체 월 1회 방역실시(업체 : 세스코) / 비정기 방역(자체 방역)

○ 위기상황 대응

- 내부 확진 시 확산감염위험 대응
- 모니터링, 보고/전달 등 소통체계 가동
- 확진자 발생 시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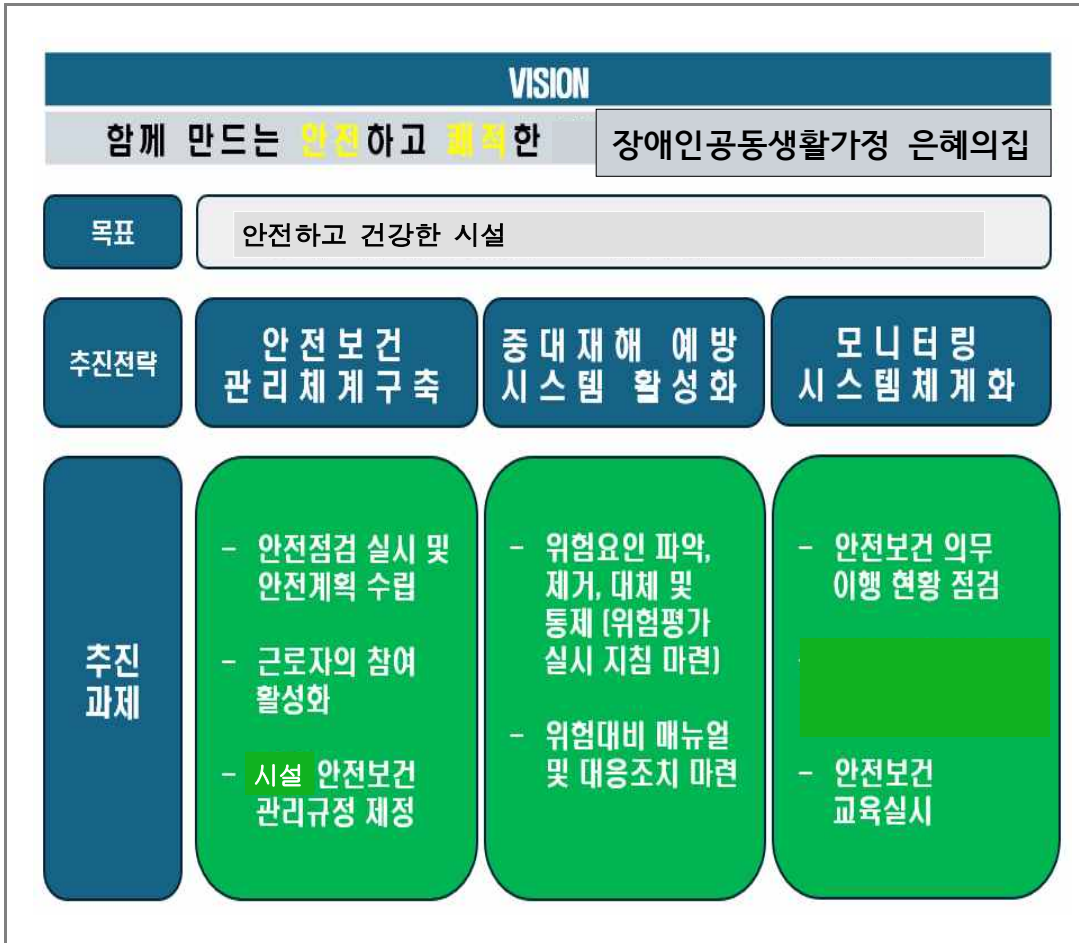


- 보고체계 역할
 - 담당자(보건담당자) : 시설 내 접촉자 동선파악 및 관련 접촉자 결과 취합 보고
 - 관리감독자(시설장) : 확진자 발생 동향보고 작성, 밀접접촉자 동선조사 및 관련기관 협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진안군청, 진안군보건소, 반월복지재단 동향보고

[참고자료] 재해 발생 보고대상 기관의 지원업무 및 보고내용

보고기관	지원업무 및 보고내용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련 담당실 (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고용노동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절차 협의 등을 위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지역 내 유관기관 공조 및 통합 지휘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치료·장례, 긴급 복구 등 • 구호 물품 지급 및 인명피해 지원 • 사망자 유족 대책 수립·추진 및 부상자 치료 지원 ○ 사고 잔해물 처리 및 인력·장비 동원 명령, 인근 시·군·구 응원 요청 ○ 관련 기관 합동 화재 원인조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실태조사, 환경영향 예측 및 복구를 위한 합동조사반 ○ 폐기물 처리 지원 대책 추진 ○ 파손·방치 차량 견인 및 사고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교통 두절 지역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물 점검 및 복구 ○ 대형화재에 따른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건축폐기물 처리 등 장비·예산 활용방안 수립·추진 ○ 사고수습 및 복구 장기화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강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련 담당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이용자 관련 행정적인 조치사항 지원 ○ 타 시설로의 이송과 관련된 자료 지원 ○ 기타 시설이용자 관련 자료 지원
소방서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 화재피해조사 및 원인조사 ○ 응급 복구계획 및 원인조사 ○ 응급 복구계획 수립·지원 ○ 부상환자 긴급 후송 ○ 복구 지원체계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기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관리업체 등 시설 관련 바우처 업체 등

방침 및 추진목표



은혜의집 시설장 송수림